(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3/2569호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8/2565호『투자 촉진 정책과 기준』에 따라, 태국 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대기업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자, 투자위원회는 불기 2520년(1977년) 투자촉진법 제16조, 제35조 및 개정안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고시한다.

1. 모든 짱왓[1](province)은 투자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2. 조건
   2.1 이 방안에 적용되는 프로젝트는 A1, A2, A3 및 A4 그룹에 속한 사업이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1) 투자청이 규정해 놓은 바에 따라 항공 운송, 해상 운송 등 사업장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프로젝트(activities)
   (2) 남부 국경지방과 특별경제개발구역(SEZ) 내에만 설립하도록 규정된 프로젝트(activities)
   (3) 데이터 센터와 전력 생산에 대한 프로젝트(activities)
   2.2 다양한 투자 촉진 방안에 따라 총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 면제를 받는 프로젝트여야 한다.
   2.3 투자 촉진증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토지 비용과 운전자금을 제외한 20억 바트 이상의 실제 투자가 프로젝트에 집행되어야 한다.
   2.4 투자 촉진 수락 기한과 투자 촉진증 발급 서류 제출 기한의 연장은 불가하다. 단, 기계 수입 기한과 완전 조업 개시 기한의 연장은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2.5 추가 권리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촉진증 발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투자청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실제 투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투자 증비 서류의 제출 기한 연장은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추가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당일에 법인세 면제 기간과 면제 한도 금액은 모두 남아 있어야 한다.
   2.6 이 방안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받은 프로젝트가 규정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투자촉진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신청은 불가하다.
3. 추가 인센티브
   법인세 면제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5년 간 투자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표준 세율의 50%만큼 감면한다.
4. 이 방안은 2026년 첫 근무일부터 2026년 마지막 근무일 사이에 투자촉진 신청서를 제출한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한다.

---

[1] 태국의 행정구역으로 우리나라의 도(道)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태국에는 총 76개의 짱왓이 있다.

5. 투자청은 이 방안에 따른 모든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정 승인 또는 불승인 권한을 갖는다. 또한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한 실제 투자 증빙 자료의 제출 기한 연장 심사 권한도 갖는다.

고시일 2026년 1월 15일

Ekniti Nitithanprapas

(Mr. Ekniti Nitithanprapas)
부총리
투자위원회 의장